

의안번호	제 342 호
의 결 연 월 일	2009년 4월 일 (제 279 회)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

발 의 자	강태원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09년 4 월 14일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

의안 번호	342
----------	-----

발의연월일 : 2009년 4월 14일
발 의 자 : 강태원, 연만흙, 김환동,
박재국, 이필용, 장주식,
조영재 의원(7인)

제안이유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도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를 충청북도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운영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홍보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1. 홍보대사의 임무(안 제2조)

- 홍보대사의 주요임무를 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등으로 정함.

2. 홍보대사의 위촉(안 제3조)

- 홍보대사의 위촉은 도지사가 함.
- 홍보대사의 위촉대상은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도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도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도지

사가 인정하는 자 등으로 함

-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함.
 - 홍보대사의 위촉은 공보관실에서 주관함.
 -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함.
3. 홍보대사의 해촉 요건 지정(안 제4조)
4. 홍보대사에 관한 총괄 및 운영(안 제5조)
- 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공보관이 담당하되, 운영은 공보관실과 사전에 협조하여 사업주관 부서에서 함.
5. 보상(안 제6조)
-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함

참고자료

- 가. 관계법령 발췌 : 별첨
- 나. 관련부서 협의 : 의견없음(공보관실)
- 다.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충청북도 홍보대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하여 충청북도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북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충청북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
2.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2. 도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3. 그 밖에 도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자

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공보관실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총괄 및 운영)홍보대사관련 업무 총괄은 공보관이 담당하되, 운영은 공보관실과 사전에 협조하여 사업주관 부서에서 한다.

제6조(보상)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관계법령 발취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별표 1. 전국 홍보대사 조례 및 규정 현황

시·도	시·군·구	조례명	기타
대구광역시	달서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	규정
인천광역시	강화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경기도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남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양평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강원도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시행규칙	시행규칙
	횡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조례	
	양구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고성군	고성군정홍보위원 운영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	
	서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명예홍보대사운영규정	규정
	나주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보성군	홍보대사에관한규정	규정
	해남군	명예홍보대사 운영 규정	규정
	영광군	명예홍보대사 운영 규정	규정
경상북도	영양군	홍보대사 조례	
	영덕군	홍보대사에 관한 규정	규정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운영 조례	
	북제주군	북제주군정홍보위원운영조례	폐지